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20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한정애·김준형·박희승

정성호 • 박지원 • 서영교

송옥주 · 김영배 · 김주영

김재원 · 이용우 · 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 없이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퇴직금의 체불 위험이 높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6.8%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체불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 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서 퇴직금제도를 삭제하여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단 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부칙제1조).
-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 다. 퇴직금 금액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자료의 제공 의무와 관련 벌칙을 새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 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전에 퇴직금에 대한 사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의 '임차'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 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손해를 최

소화함(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 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급여수준을 작성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5조 단서 신설).
-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30명"을 "100명"으로 한다.

5의2.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5호의 급여에 갈음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주택구입"을 "주택의 구입·임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퇴직금제도를"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를 "근로자

- 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택구입"을 "주택의구입·임차"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는 제3항의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과 관리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의 퇴직금 산정 방법과 제4항의 퇴직금 적립 현황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및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를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를 "제4조제 3항"으로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 고용노동부장관 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를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의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그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제도 설 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은 제 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5의2.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
|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5호의 |
| | 급여에 갈음하여 일시에 지급 |
| | 하는 임금을 말한다. |
|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 | 6 |
| 형퇴직연금제도, <u>확정기여형</u> | <u>확정기여형</u> |
|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 |
| 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 | 직연금기금제도 |
| 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
| 7. ~ 13. (생 략) | 7. ~ 13. (현행과 같음) |
|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 14 |
| 도"란 중소기업(상시 <u>30명</u> | <u>100</u> 명 |
|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
|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 | |
| 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 |
|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 | |
| 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 | |
| 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 | |
| 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 | |
| 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 | |

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 다.

15. • 16. (생략)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 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 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 (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 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략)

| | 15. · 16. | (현행 | 과 | 같음) |) | | |
|---|-----------|------|------|-----|----------|----------|-----|
| 제 | 4조(퇴즈 | [급여기 | 제도 | 의 설 | 보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사</u> | 용 |
| | 자가 퇴 | 직급이 | 년제! | 도를 | 설 | 정하 | -フ] |
| | 어려운 | 사정 | 니 | 대통 | - 령 | 령으 | 로 |
| | 정하는 | 사유기 | ነት 9 | 있는 | 경- | 우에 | 는 |
| | 제8조의 | 퇴직 | 금자 | 도를 | <u>.</u> | 설정 | 할 |
| | 수 있다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지 <u>퇴직금제도</u>를 설정하려는 사용 자는 <u>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u> 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u>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u>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u>주택구입</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 ② |
|--------------------|
| <u>주택의 구입·임차</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
|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
| 금제도 |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
|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 근 |
| 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
| <u>,</u> |
| ② |
| <u>주택의 구입·임차</u> |
| |
| |

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u>계속</u>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u>계속</u>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u>퇴직금</u> |
|-------------|
| |
| |
| <u>근로기간</u> |
| |

- ③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 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 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 다.
- ④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는 제3항의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과 관리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의 퇴직금 산정 방법과 제4항의 퇴직금 적립 현황등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제공 요청 및 통지의 방법・절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되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저

- ① ~ ③ (생 략)
-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제23조의7제1항에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단서 신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

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삭 제>

| | 123 | 조(| 퇴직 | 급여 | 겨등 | 의 | 우 | 선병 | 担 ス | 引) |
|---|--------------|--------|---------------|--------|------------|-----|-----|----|-------------|----------|
| | 1 | ~ | 3 | (현 | 행고 | 가 같 | 음)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다</u> | 만, | 가입 | 자으 |] | 속 | 근 | 로 |
| | <u> 7] 2</u> | 간이 |]] | 년 | 미 | 만인 | 경 | 우 | 에 | 는 |
| | 근! | 무일 | <u>]</u> 수 | 케 | 刊 | 례하 | ञ् | 계 | 산 | <u>한</u> |
| | <u>금</u> | 액 으 | <u></u> 으로 | 한1 | 다 <u>.</u> | | | | | |
| 1 | 13 | 조(| 확 7 | 성급 | 여전 | 형퇴기 | 직 연 | 금 | 제 | 도 |

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 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

| 의 설정) |
|-------------------------------------|
| <u>제</u> 4조제3항 |
| |
| |
| |
| <u>.</u> |
| 1. ~ 11. (현행과 같음) |
| 제15조(급여수준) |
| |
| |
| |
| <u>다만, 가입자의</u>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 |
| 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
|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 |
| <u>여야 한다.</u>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 세19조(쵝정기억용되작원급제도 의 설정) ① |
| |
| 제4조제3항 |
| |
| |

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

②・③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21조의5(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
| 도의 타당성 검토 등) 고용노 |
| 동부장관은 확정기여형퇴직연 |
| 금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2025 |
|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 |
| 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
|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
|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
| 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 제도의 설정) ① |
| |
| |
| |
| |
| <u>제4조제3항</u>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 업에 대한 특례) ① |
|---|
| |
| 제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48조(과태료) ① |
| |
| |
| |
|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금 |
|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금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금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자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금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자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사용자 |